

#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2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연도중 보조내시된 국·도비 보조사업 및, 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0,52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,07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,960백만원이 증액된 350,313백만원, 특별회계는 1,111백만원이 증액되어 70,215백만원 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100백만원, 조정교부금 41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2,213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7백만원 증액, 지방채는 1,000백만원 감액 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국·도비보조금 1,977백만원, 지방채 1,000백만원 증액, 세외수입 150백만원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,716백만원 감액되었음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5,071백만원 증액, 재무활동 539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2,572백만원 감액되었음.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00백만원, 재무활동 311백만원 증액, 행정운영경비 100백만원 감액 되었음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